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폴리텍대학 국립대학법인 전환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7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4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총괄의견	5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5
나. 총괄의견	11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가. 목적(안 제1조)	14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2조)	16
다. 법인격, 설치학교 및 정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8

라. 학칙(안 제6조)	22
마. 임원, 총장 등 조직 관련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27
바. 평의회 및 학사위원회(안 제19조 및 제20조)	40
사. 법인회계, 자본금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45
아.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대부 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48
자. 예산 및 결산 등(안 제28조 및 제29조)	52
차. 수익사업(안 제30조)	56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58
타. 부설학교(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62
파. 보칙 및 벌칙(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66
하. 부칙	68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9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둔다.

라.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배경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기능대학·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¹⁾을 설립근거로 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임.²⁾

이처럼 한국폴리텍대학의 설립근거가 개별법이 아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있어 온전한 책무수행과 종합적 직업교육 사업추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한국폴리텍대학이 공공기관과 사립대학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사업수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이 일부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한국폴리텍대학 관련 일반사항은 [참고1] 참조

3)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불분명한 지위·정체성으로 인하여 과거 전신인 직업훈련소 역할로 대학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고, 8개 대학(35개 캠퍼스, 4개 교육원)이 병렬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수행 및 의사결정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업훈련과 기능인력양성이라는 기관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총괄의견

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제정안은 종전의 사립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총 7장, 본칙 42개 조문과 부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1장(총칙)으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법의 목적(안 제1조)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며(안 제2조), 법인격·설치학교·정관·학칙 등 국립대학법인으로써 규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2장(조직)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 총장, 부총장, 학장 등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

와 감사 2명으로 임원을 구성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또한 제정안은 임원 결격사유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안 제16조), 교직원과 관련한 사항(안 제17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안 제18조)를 규정하며, 대학 운영을 위한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제3장(재무회계)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정 및 회계와 관련한 사항으로, 법인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연도를 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21조 및 제28조), 자본금 산정방식·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 관리 및 보호·국공유재산의 무상 양도 및 대부·토지 수용 및 사용 등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또한 제정안은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차입 및 학교채를 발행 및 수익 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하고, 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제4장(지원 및 육성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5장(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부설학교)**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6장(보칙)에서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을 두고 있고, 제7장(벌칙)에서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둠(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공포한 날), 기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 총장 임명·연금 적용의 특례, 법인 임원·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계의 승계 및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이러한 제정안의 구성체계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국립대학법인의 근거법률과 구성체계가 유사하나, 기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조직 및 재무회계 등 구체적 사안에서 상이한 부분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음.

[표]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구분		세부내용
제명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총칙	제1조(목적)	•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기능 인력 양성,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 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책무 이행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관련 타 법률에 우선 적용 • 이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능대학 규정 준용 • 부설 중등학교 운영은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름
	제3조(법인격 등)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제4조(설치 학교)	• 필요한 지역에 대학 설치 및 캠퍼스 설치 • 각 대학과 지역캠퍼스의 설치는 정관으로 함
	제5조(정관)	• 목적, 명칭 등 정관 기재사항 규정
	제6조(학칙)	• 각 대학 및 지역캠퍼스에 설치되는 과정과 학과 등 학칙 포함사항 규정
조직	제7조(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
	제8조(총장)	•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임기는 4년 연임 가능
	제9조(총장의 선임)	•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회 선임,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총장 겸임 가능
	제10조(부총장, 학장 등)	• 각 대학에 1명의 부총장을 두고, 각 대학에 소속하는 지역캠퍼스에 학장을 두며, 부총장과 학장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제11조(이사)	• 총장, 부총장3명, 평의원회 추천 인사 1명, 재정경제부·교육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

구분		세부내용
		력공단 소속 인사 각 1명 및 기타 대학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교외 인사 • 이사장 임기 4년, 이사 임기 2년, 각 1회 한하여 연임 가능
	제12조(이사회)	• 이사회 구성 등
	제13조(이사회 의 소집)	• 이사회 소집 요건 규정
	제14조(이사회 의 기능)	• 총장 선임 사항 등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규정
	제15조(감사)	• 감사 자격 및 임기(3년 중임 불가) 등
	제16조 (결격사유 등)	• 임원 결격사유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 규정
	제17조 (교직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을 둠 • 교직원 임면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준용
	제18조(영리업 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총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등 규정
	제19조 (평의원회)	•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의를 위한 평의원회 관련 사항 규정
	제20조 (학사위원회)	• 연도별 대학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 규정
재무 회계	제21조 (법인회계 등)	• 법인회계 설치 및 회계연도 규정
	제22조 (자본금 등)	• 자본금 산정방식 등 규정
	제23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 및 보호 규정
	제24조(국유재 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대부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
	제2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등 수용 및 사용 가능 규정
	제26조(개인재 산의 양여 또는 출연)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구분		세부내용
	제27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가능 규정
	제28조(예산 및 결산 등)	•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등
	제29조(잉여금의 처분)	• 잉여금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제30조(수익사업 등)	•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가능 및 수익금 학교 경영 충당 필요
지원 및 육성 등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 국가의 안정적 재정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국폴리텍대학교 별도 법인 설립 기금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특례 규정
	제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 국가의 출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 규정
	제33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 4년 단위의 계획 수립·공표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34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 성과목표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연도별 대학 운영계획 수립·공표함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부설 학교	제35조(부설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36조(교직원 임면)	• 부설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
	제37조(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 부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21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되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함
	제38조(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지원금에는 안 제32조 준용
보칙	제3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명칭과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사용 금지

구분		세부내용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민법」의 준용)	•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벌칙	제42조(과태료)	• 제39조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총괄의견

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며 이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대학이 스스로 학사 및 연구조직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재정·회계제도도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등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과 같이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대학으로써의 성격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은 ‘기능대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기능대학은 사실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립한 폴리텍대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현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폴리텍대학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ICT 폴리텍이 있으나, ICT 폴리텍은 1개 캠퍼스·5개 학과에 불과함.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한국폴리텍대학이 기능대학으로서의 본질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제정안과 같이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기능대학으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져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직업교육·훈련 체계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국가적인 직업교육·훈련 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법 제40조의2), 부설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법 제40조의3), 학칙 제정 또는 개정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법 제4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능대학 학

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법 제49조의2), 기능대학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법 제50조) 등 관리·감독에 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고용노동부는 ①이미 폴리텍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존재하는데,⁴⁾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과 실익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②제정안이 ‘학교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인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설치하는 ‘대학’의 운영에 관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③제정안은 주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조직·지위·지원 등에 관해 규정할 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한바 현재 지원체계와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어보이지 않으므로 궁극적인 폴리텍대학의 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고, ④한국폴리텍대학의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고용노동부는 과거 기능대학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의 차이를 고려해 특별법으로 1977년 「기능대학법」을 제정하였으나, 2010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해당 법률을 통합한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폴리텍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존재한다고 설명함.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기능 인력 양성,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현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려는 제정안의 목적 및 폴리텍대학의 사업에 대한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하의 조문들에 부합하는 면이 있음.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자 ‘기능대학’으로써의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제정안이 기술·기능 인력 양성,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는 목적이 폴리텍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존 국립서울대학교, 인천시립대학교가 대학의 운영 자율성 등을 위해 설립·운영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은 사립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2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능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부설하는 중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능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학장”은 “총장”으로 본다. ③ 제3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부설하는 중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한 별도 조직법을 제정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면이 있음.

그러나 안 제2조제2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기능대학에 관한 규정(제5장)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립대학법인’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의 어느 규정이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바⁵⁾ 조문 위치의 수정이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타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나, 제정안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타법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임.

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258쪽

다. 법인격, 설치학교 및 정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는 근거와 설립 요건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대학 및 캠퍼스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정관의 필수적 사항 및 변경 요건 등을 규정함.

제정안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치학교)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학을 설치하고, 대학 별로 필요한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각 대학과 지역캠퍼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각 지역의 대학과 대학 소속 캠퍼스의 명칭과 위치 5.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1. 학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3. 학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6.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검토의견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는 법률에서 해당 공사나 공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이에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법인의 설립 요건인 설립등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보임.

다만, 안 제4조는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별로 필요한 지역에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고등교육법」 제4조는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⁶⁾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⁷⁾ 역시 학교법인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때 학교 설립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유사 입법사례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의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나, 한국폴리텍대학은 학교 설립을 전제하고 있는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6)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참고로 이때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인’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라. 학칙(안 제6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학칙 필수 포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정안
제6조(학칙)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대학 및 지역캠퍼스에 설치되는 과정과 학과 2.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3. 수업연한 4. 원격수업 등 수업방식 5. 각 과정 및 학과별 학생정원 6. 입학자격 7. 신입생 선발방법 8. 졸업 요건 9.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 10.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

2) 검토의견

안 제6조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의 필수 포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칙의 필수 기재사항과 일부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학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칙 규정]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 1. 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2. 1. 6.>

④ 삭제 <2012. 1. 20.>

⑤ 삭제 <2012. 1. 20.>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칙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서는 법률로써 학칙의 필수 구성요소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데,

제정안의 경우 학칙을 법률로써 규정하면서도 학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연한·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등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대학 학교규칙·학칙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능대학’의 학칙의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개정

시 관계 부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러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기능대학’ 학칙 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학칙) 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1조(학칙) 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재학연한·학년·학기·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12.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임원, 총장 등 조직 관련 규정(안 제7조부터 제11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총장, 부총장, 학장 등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7조(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률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총장의 선임) ① 총장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제도와 행정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부총장, 학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각 대학에 1명의 부총장을 둔다.

- ② 각 대학에 소속하는 지역캠퍼스에 학장을 둔다.
- ③ 부총장과 학장은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장이 선임한다.
- ④ 부총장과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부총장과 학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그 밖에 총장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총장
- 2. 부총장 3명
- 3.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1명
- 4.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인사 각 1명
- 5. 기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교외 인사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제7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업무와 운영의 적법성을 감사하

는 일

3. 이사회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한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용노동부⁹⁾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

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총장·부총장·학장 및 교직원과 겸임교원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의 이사회와 별도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장을 ‘총장’으로 하고, 산하에 지역 대학 및 캠퍼스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직 구조를 변경함. 이에 따라 총장 및 부총장 직위를 신설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인원과 임기를 전반적으로 늘리며, 감사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9) (자구) 노동→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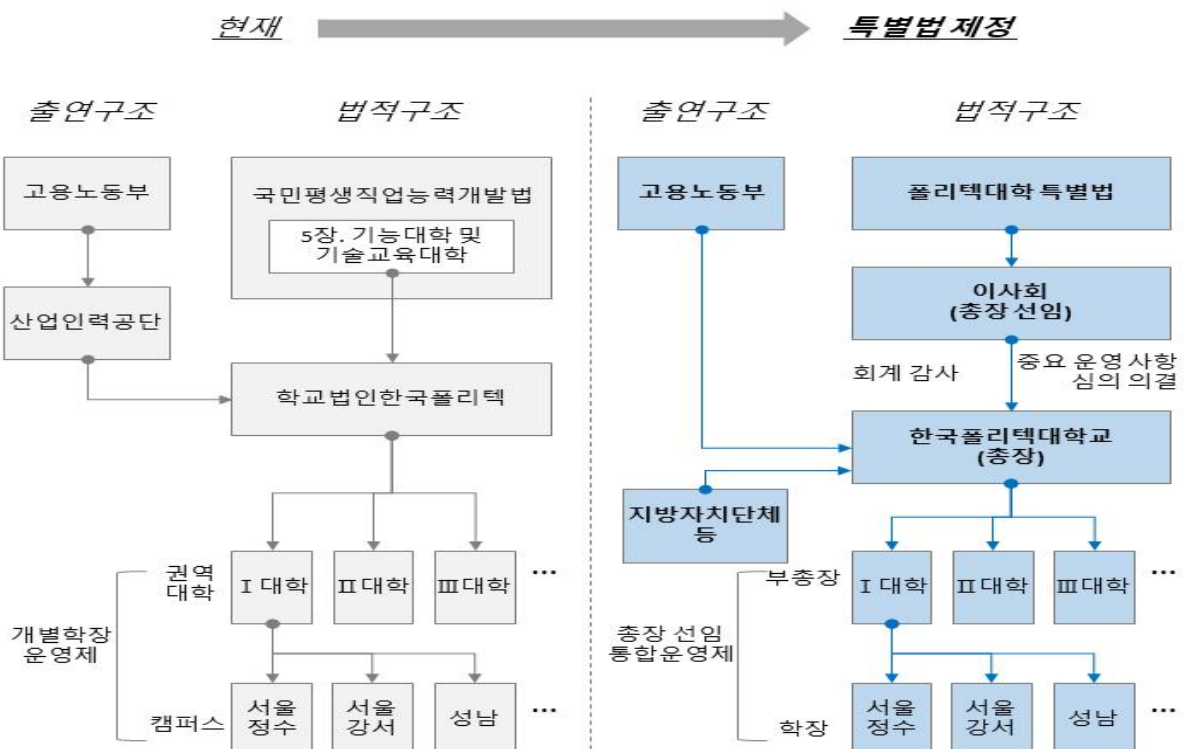
즉, 제정안은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며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정관」에서 구성하고 있던 것과 다르게 조직구조를 변경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임원 등 조직 구조 세부 내용을 기존 정관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임원 등 조직 구조 세부 내용 비교]

구분	기존 정관	제정안
임원	이사 15인(이사장 1인포함) 감사 2인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승인을 받아 취임, 다만 공단 소속인사로서 세척이 정하는 직에 있는자는 당연직 감사로 취임) 이사장과 상임이사 2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 감사 2명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 1인은 변호사 자격자 중 이사회에서 선임) 비상근 관련 규정 없음
이사 구성	당연직 이사 외에는 이사 15인의 구체적 구성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총장 부총장 3명 평의회 추천 인사 1명 재경부,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인사 각 1명 기타 교외 인사
이사 취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 (기획예산처,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인사 각 1인의 인사로서 세척이 정하는 직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로 취임)	부총장 3인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교외 인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함

구분	기존 정관	제정안
임기 관련	이사장 3년 이사 및 감사 2년 *이사는 1년 단위 연임 가능 감사는 1회 한하여 중임 가능	이사장(선임 규정은 없음, 임기 4년, 1회 연임 가능) 총장(임기 4년, 연임 가능) 부총장(임기 2년, 연임 가능) 기타 교외 인사(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감사(임기 3년, 중임 불가)
총장	-	신설: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둠
부총장	-	신설: 각 대학에 1명의 부총장
학장	임기 2년·중임 가능, 경영성과에 따라 임용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임용절차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용 기간 연장 가능	지역캠퍼스에 학장을 둠 (임기 2년, 연임 가능)

이와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은 제정안을 통해 아래 사진과 같이 법적 구조가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함.



국립대학법인으로 기관의 성격을 전환함에 따라 일부 조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정안 각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8조 관련,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에 별도로 대학의 장인 총장을 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현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 ‘총장’을 신설하여 타 국립대학법인과 유사한 총장-부총장-학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형성하려는 것인데, 한국폴리텍대학은 단일한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국립대학법인과 다르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산하에 각 권역 대학 및 지역 캠퍼스를 설치하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음.

현재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전국 소재 39개 기능대학 및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법인’ 역할을 하고, 별도 대학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하면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학의 장인 총장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서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각 대학’, ‘대학에 소속하는 지역캠퍼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립대학법인 자체는 대학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10) 참고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모두 이사장, 총장을 두고 있으나 이들 대학법인은 단일대학구조로 8대학-35캠퍼스를 가지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그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7조제1항1호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는 이사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사장’을 제외하고 있고, ‘총장’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사장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이사장과 총장의 선임 절차가 상이한데, 안 제9조제2항은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 절차가 상이한 이들간의 겸임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7조제3항은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은 총장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이때 안 제9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임 절차와 임명권자가 상이한 총장과 이사장 간의 겸임 가능성이 임원 선임 절차 규정의 체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임원 등의 임면 등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① 국립대학법인과 관련된 타 입법례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취임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와 관련한 법적용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평의회 추천 인사 1명에 대한 이사회 선임 및 주무부처(교육부) 장관의 취임 승인 절차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고, 결격사유에서도 이들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¹¹⁾

1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그러나 안 제11조제3항은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평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1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의 취임 승인 절차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때 안 제16조는 결격사유 등에 관해 규정하며 총장을 제외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이 회계 부정, 횡령 등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제3항은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은 ‘기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교외 인사’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평의회 추천 인사’의 비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취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현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기획·운영이사 2명의 상임임원이 전국 소재 대학·지역대학(캠퍼스)의 기획·조정·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임임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받아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횡령·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③ 제정안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인사 각 1명을 이사로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 「한국폴리텍대학 정관」은 재정경제부가 아닌 ‘기획예산처’ 소속 인사를 당연직 이사로 두고 있어,¹²⁾ 당연직이사 인사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데 제정안에 따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지위 변경이 이와 같이 이사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이사 수의 확대와 관련,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인 이내의 이사로 임원을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임원의 중요 내용인 상임 여부·상임임원 수·선임절차 등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 ② 국립대학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 볼 수는 있으나 법인이 학교 자체는 아니므로 법인에 ‘학교의 장인 총장’을 둘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③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체계의 정합성과 대학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 ④지역캠퍼스의 정

12) 「한국폴리텍대학 정관」 제20조(상근임원의 임원의 선임방법 <개정 '06.2.28 '12.1.26>)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기획예산처, 교육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인사 각 1인의 인사로서 세척이 정하는 직에 있는 자는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다. <개정 '98.7.4, '00.2.15, '01.5.31, '03.12.9, '08.10.16, '10.11.22, '13.7.15, '19.10.14, '26.1.22>

의 자체가 불명확하고, 안 제10조제6항의 경우 각 대학과 지역캠퍼스를 총장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 폴리텍대학의 권역대학-지역대학 체계에서의 각 대학 자율성 측면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⑤ 제정안은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고, 이사장과 총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이사장과 총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교육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⑥안 제17조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직원 은 총장이 아닌 이사장이 임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바. 평의원회 및 학사위원회(안 제19조 및 제20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평의원회와 학사위원회를 두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19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4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9.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11.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직원 중 부총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총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고등교육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회’¹³⁾를 규정하고 있

1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회(이하 “대학평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음.

제정안은 이러한 대학평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등 구체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지위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해당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¹⁴⁾ 제정안과 같이 대학평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을 「고등교육법」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은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 ③ 대학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대학평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대학평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1. 28.]

14) 다만, 한국폴리텍대학은 그간 대학평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학사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그런데 안 제19조제2항은 평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고등교육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사항도 「고등교육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등교육법」과 제정안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사항 비교]

「고등교육법」	제정안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	안 제11조제1항제3호(평의원회 추천 인사 1인)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참고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평의원회 및 학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⁵⁾

고용노동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설치 근거가 있고, 안 제2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평의원회 및 학사위원회 심의 사항 중 학교 경영·운영의 주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바 이사회 심의·의결권과 충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사. 법인회계, 자본금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법인회계 설치, 회계연도 규정, 자본금과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21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회계연도는 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자본금은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소유자산의 평가액과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산의 평가액 및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기채(起債) 또는 장기차입으로 발생하는 부채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자본금의 산정방식, 재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자본금의 증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은 교육과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이나 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면적·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이나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예금채권과 교육이나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압류하지 못한다.

2) 검토의견

안 제21조와 같이 별도의 법인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연도를 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국가예산의 회계연도와 일치시킨 규정으로 보이고, 안 제22조의 자본금 등 산정방식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¹⁶⁾

다만, 다른 국립대학법인 설립 법률과 달리 안 제23조제3항은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1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교육·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면적·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 중 대학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예금채권뿐 아니라 교육이나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음.

‘교육이나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압류 금지의 대상으로 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채권자 등의 입장에서 압류 금지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도 수업료와 납부금을 받을 권리, 교비회계 등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만을 압류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⁷⁾

고용노동부는 안 제23조 관련, 한국폴리텍대학의 재산은 국가 등으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으로, 안 제23조제1항 단서는 경미한 사항의 매도 등을 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7)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아.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대부 등(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 국·공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지자체는 법인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제정안
제24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대부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27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등을 규정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이 학교용지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4조제1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

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18)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로, 동법 제4조19)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그 근거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에 관한 것인바 국가의 국유재산 및 물품 무상 양도, 대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임.

셋째, 안 제27조 관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주무부처장관의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의 승인을 위한 협의 대상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 소관에 따라 협의주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 1. 11.>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4조제1항은 국가 소유의 재산 및 물품에 대한 특례로 지방정부 소유의 재산과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사용에 지장을 주고,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며, 유사 입법례²⁰⁾에서도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재정경제부는 안 제24조 국유재산특례 신설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특례신설 기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유재산 특례 규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병행 발의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자. 예산 및 결산 등(안 제28조 및 제29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장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예산 및 결산과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2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이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법인회계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안 제28조제2항은 총장으로 하여금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이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이 「사립학교법」²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보다 법인회계의 투명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국립대학의 장이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법인 포함)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²⁾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로 단순 사실확인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21)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 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2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독립적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감사의견의 표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이 현재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현재 12개의 국립대학(국립경북대, 국립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경인교대 등)은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결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³⁾ 국립대학 간 일관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둘째, 안 제29조는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는²⁴⁾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계정으로 잉여금을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잉여금에 관하여 안 제29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제정된 법률임.

23)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개별 설립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2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잉여금을 목적 등이 분명하지 않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안 제29조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안 제28조 관련,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이사장이 있는 만큼, 총장이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의 제출 및 공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령 제정안에 따라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한다고 하더라도 동 사안은 총장의 지위가 아닌 이사장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차. 수익사업(안 제30조)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한국폴리텍대학교 및 교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30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현행 한국폴리텍대학의 정관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수익사업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²⁵⁾

이때 제정안은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법인의

25) 「한국폴리텍대학 정관」 제29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학교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출판사업 <신설 '98.12.31>
2. 부동산 임대업 <신설 '98.12.31>
3. 용역사업 <신설 '98.12.31>
4. 물품제조 및 판매업 <신설 '00.6.12>
5. 전자 상거래 <신설 '00.6.12>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00.6.12>

수익사업 가능 근거 규정과 함께 교원의 수익사업의 근거 규정도 신설하고 있는데, 법인 외 교원에 대한 수익사업을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교원 수익사업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²⁶⁾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²⁷⁾도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고용노동부는 법인이 아닌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만 할 뿐 수익금 활용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데, 교원의 연구 결과는 공공 재원·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출된 것인 만큼 개인의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한국폴리텍대학의 계획수립 등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의 발전 및 실습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3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4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사회적 책무,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의 안정

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1조제2항의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 충당 기금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²⁸⁾ 제29조 외에는 개별법에서 이러한 법인 기금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신설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세제 특례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출연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 회계연도 국가예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률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경우,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⁹⁾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기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고용노동부는 안 제31조 관련,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기금의 설립,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 등 도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32조 관련 국가의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필요가 있으며, 안 제32조에서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도 기능대학에 대한 지원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8조), 국립대학법인이 기능대학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33조의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수립하는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부설학교(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³⁰⁾의 학교를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 임면·부설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통합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제35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이전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치·경영하던 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제36조(교직원 임면) ① 부설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제37조(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21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30)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검토의견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다솜고등학교와 같은 부설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로써 둔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의 부설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이나, 한국폴리텍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에 해당하게 되어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로 성질이 전환됨.³¹⁾ 이에 따라 현재 부설학교 교원 및 직원의 연금 적용 여부,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정안 부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인바,³²⁾ 현재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

31)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3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원 및 직원은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제정안 제17조는 ‘교직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
-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음.

따라서 부칙에서 부설학교 교원 및 직원의 연금 적용 여부 및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파. 보칙 및 벌칙(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보칙으로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을 두고 있고,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정안
제3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3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의 보칙 규정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대한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민법의 준용 및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 또한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안 제42조는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보임.

하. 부칙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부칙으로 시행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 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총장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이사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총장을 겸임한다.
제4조(연금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 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법인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임원은 그 잔여 임기 동안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6조(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법인회계는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회계를 승계한다.

제8조(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재적생(在籍生), 졸업생 및 제적(除籍)·제명(除名)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재적생, 졸업생 및 제적·제명된 사람으로 본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의 부칙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을 제정안의 시행일로 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다수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정 등 시행준비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전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총괄의견 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폴리텍은 기능대학의 성격을 가지는데, 제정안을 통해 설립되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기존 한국폴리텍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는 기능대학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셋째, 제정안과 같이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조직이 구성될 경우, 총장·부총장 등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이 생기는 것인데, 원활한 조직의 전환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 또는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의 부칙에서는 설립

준비위원회, 설립절차 등을 규정한 사례가 있음.

넷째,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인바,³³⁾ 현재 부설학교에 근무하

3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

는 교원 및 직원은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제정안 제17조는 ‘교직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부설학교 교원 및 직원의 연금 적용 여부 및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0

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1 설립근거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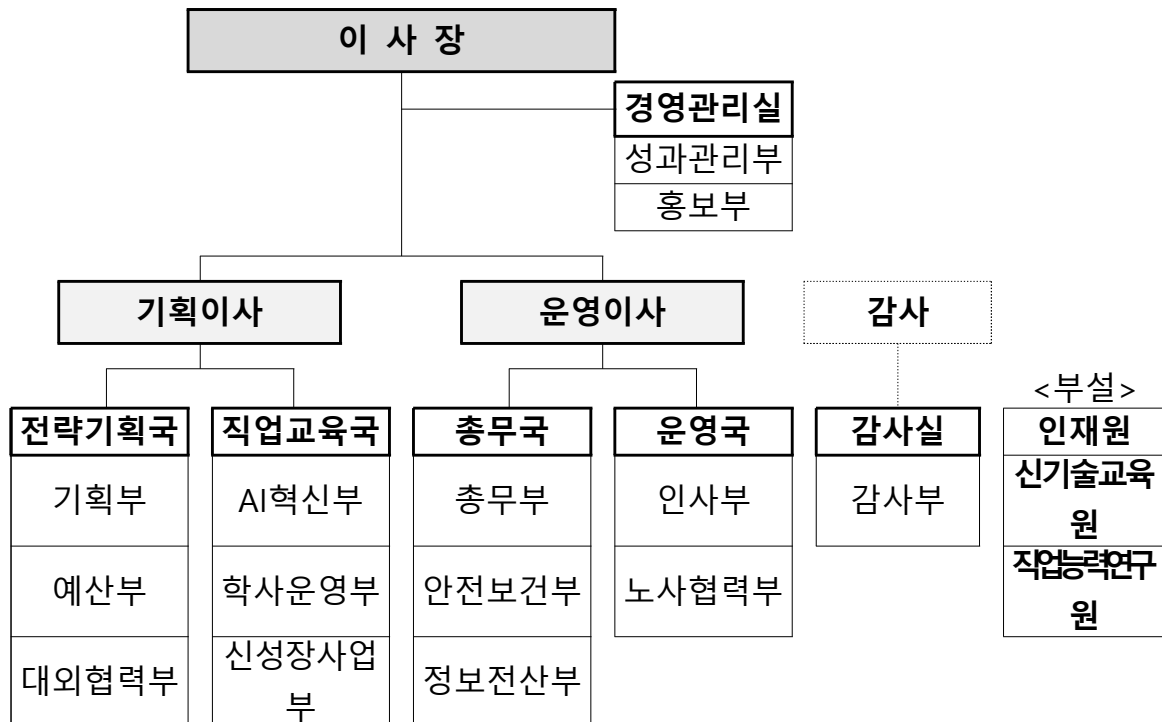
- (설립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 (설립목적)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

2 주요 연혁

- 1968. 6. '국립중앙직업훈련원' 설립(現 한국폴리텍Ⅱ대학)
- 1998. 2. '학교법인 기능대학' 설립
- 2006. 3. '한국폴리텍대학' 출범(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합)

3 조직

- (법인) 이사장, 2이사, 4국, 2실, 3부설기관



□ (학교) 8대학(35캠퍼스, 4교육원), 1고등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I 대학	II 대학	III 대학	IV 대학	V 대학	VI 대학	VII 대학	특성화 대학		
서울정수	인천	춘천	대전	광주	대구	창원	바이오 (충남 논산)	다솜고 (충북 제천)	
서울강서	남인천	원주	청주	전북 (전북 김제)	구미	부산	항공 (경남 사천)		
성남	화성	강릉	아산	전남 (전남 무안)	남대구 (대구 달성)	울산	반도체융합 (경기 안성)		
제주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충남 (충남 홍성)	익산	포항	동부산	로봇 (경북 영천)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충주	순천	영주	진주			
				전력기술 (교육원(나주))	영남융합기술 (대구)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울산))			

4 인력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학장	지역 대학장	교장	교감	대학 교원	직능 교사	중등 교사	일반직	무기 계약직
정원	2,750	3	8	29	1	1	1,218	95	28	526	841

5 예산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5년(A)	'26년(B)	증 감 (B-A)	%
총 계	443,183	447,969	4,786	1.1
○ 고등·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고특 회계)	349,414	356,497	7,083	2.0
○ 자체수입	36,080	31,694	△4,386	△12.2
○ 고용보험기금	57,689	59,778	2,089	3.6